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인의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 대외발표 사전허가제 폐지〉

■ 김병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445호)

2025. 11.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병기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0. 1.
3. 회부연월일 : 2025. 10.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순수한 학술·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그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런데 미국, 독일 및 일본 등에서는 군인의 언론 인터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 비밀유지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군은 군인이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군 외부에 발표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군인이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군 외부에 발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두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군인이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할 경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16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대외발표 및 활동)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순수한 학술·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대외발표 및 활동) ----- ----- -----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군 외부에 발표하는 경우
<신 설> (※단서를 위치이동)	2. 순수한 학술·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 현행법은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순수한 학술·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그 예외를 두고 있음¹⁾.

□ 이에 따라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할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²⁾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³⁾.

□ 이에 개정안은 군인이 군사기밀⁴⁾(군사 I,Ⅱ,Ⅲ급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군 외부에 발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두어 군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6조(대외발표 및 활동)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순수한 학술·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9월 15일 국방부장관에게 「국방홍보훈령」상 군인 군무원 등의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언론 인터뷰 제한 사유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토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4)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제3조(군사기밀의 구분) ①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I 급비밀, II 급비밀, III 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3조(군사기밀의 등급 구분) ① 「군사기밀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사기밀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군사 I 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2. 군사 II 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3. 군사 III 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군인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의 일원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의사표현과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군 내부의 비위·부조리를 적시에 드러내고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은 공무원(군인 포함⁵⁾)이 비밀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는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⁶⁾하고 있음.

군인의 경우 국방 및 군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다루는 직무 특성상, 해당 내용을 외부에 발표해도 무방한지 여부에 대해 개인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했을 때의 이익과, 현

5)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직공무원: **군인** (이외 생략)

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행처럼 사전 허가제도를 유지했을 때의 공익적 효과를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는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무상 비밀에 준하는 국방 및 군사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